

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일자리지원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
기획재경위원회(2024. 11. 29.)

2. 개정이유

- 지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, 영세화로 기술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, 기피업종, 인력부족 중소기업 등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- 고용촉진 및 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 2)
 -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, 기피업종 및 인력

- 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,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과
-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10. 11.~10. 3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, 우리구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·유지를 위한 채용장려

금, 취업장려금, 고용유지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